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2
----------	----

제출일자: 1999. 6. 29.
제 출 자: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재원이 시융자금으로 운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시 조례가 없어 구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고('89년도 제정 이후 운영실적 전혀 없음), 영세 노점상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과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활용할 수 있음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

3.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이자보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